긴급 입찰공고 사유서

1. 추진근거

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】
제35조(입찰공고의 시기)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
1.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
2.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3.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·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4.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
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
1.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2.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

2. 추진사유

○ 사업화유망기술에 대한 2차 기술컨설팅(민간TLO) 지원을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조속한 실행이 필요하며 이에 공고 단축 추진 필요
* 제출일 마감 전 일 기준 40일에서 14일로 단축 공고 예정

이에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,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5조 제4항 4호에 의거하여 본 사업은 긴급 입찰공고를 시행하고자 함.

2019. 10. 07.

담당자 : 기술사업화팀 박범근 (인)

부서장 : 기술사업화팀 이정우 (인)